

□ 보고개요

- 관련근거 :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5조의2

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
- 보고내용 : 2022년 2분기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내역

- 전용내역 : 1건, 3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부서	세부사업	통계목	예산액	전용금액		승인일
				감액	증액	
계				△30,000	30,000	
노동정책 담당관	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	308-01 자치단체경상보조	30,000	△30,000	-	'22. 6. 9.
		403-01 자치단체자본보조	0	-	30,000	

□ 전용 사유

- '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'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신설, 시설공사 및 비품 구매 등의 다양한 지원 필요
- 시설 신설, 공사, 비품 구매 등 자산 취득적 성격이 포함된 지원내용을 고려하여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예산 전용하여 자치단체 교부